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7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7월 13일, 금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2년 7월 13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년 7월 21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10. 19.) 및 시행(2022. 4. 20.)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가맹점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안 제2조, 제7조, 제8조)
- 상품권의 발행방법 중 권면금액을 삭제함(안 제4조제4항)
-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고, 구 금고 계정 운영이 불가할 경우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상위법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의2)

- 상품권 발행방법 중 권면금액 삭제에 따라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 “구매건별 구매금액” 으로 함(안 제7조제4항)

- 판매대행점의 위탁 사업에 따른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5호)
- 등록이 취소된 업체의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3항)
-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토록 함(안 제8조제4항)
- 가맹점 등록취소 강행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개정 이유

-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대행사 관련 규정과 상품권 권면금액의 삭제, ▶가맹점과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2) 주요내용

- ① ‘판매대행점’ 이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안 제2조, 제7조, 제8조)

⇒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정의에서 운영대행사를 삭제하고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발행, 유통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경함

② 상품권의 발행방법 중 권면금액을 삭제함(안 제4조제4항)

⇒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구체적인 종류와 권면금액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법 제4조제4항)

그런데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하여 결제하는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의 불편함과 이로 인한 이용을 저하,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의 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노령층 등을 위한 실물카드 형태로 상품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회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실물카드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¹⁾이 발의되었음

③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고, 구 금고 계정 운영이 불가할 경우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상위법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상품권 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

④ 상품권 발행방법 중 권면금액 삭제에 따라 상품권 잔액 환급 기준을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241,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구매건별 구매금액” 으로 함(안 제7조제4항)

- ⑤ 판매대행점의 위탁 사업에 따른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 ⑥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5호)
- ⑦ 등록이 취소된 업체의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3항)

⇒ 위법적인 가맹점 등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취소된 가맹점의 재등록 신청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되어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⑧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토록 함(안 제8조제4항)
- ⑨ 가맹점 등록취소 강행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제5항)

다. 검토의견

○ 「지역사랑상품권법」의 주요 개정 사항

지역사랑상품권은 1999년부터 지역화폐, 고향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8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했고, 2020년 5월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상품권의 발행과 판매대행점, 가맹점의 등록과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이 법제화되었음.

-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개정(2021.10.19.)하여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 금고에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음
(법 제4조의2).

또한,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가맹점 등록 신청에 대한 간주
규정(법 제7조), ▶등록 취소된 가맹점의 재등록 제척 기간(법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법 제15조) 등이 마련되었음.

-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운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